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15284

발의연월일: 2022. 4. 15.

발 의 자: 박홍근 의원

찬 성 자: 강득구·강민정·강병원

강선우・강준현・강훈식

고민정 • 고영인 • 고용진

권인숙 • 권칠승 • 기동민

김경만 · 김경협 · 김교흥

김남국 · 김두관 · 김민기

김민석 · 김민철 · 김병기

김병욱 · 김병주 · 김상희

김성주 · 김성화 · 김수흥

김승남 · 김승원 · 김영배

김영주 · 김영진 · 김영호

김용민 · 김원이 · 김윤덕

김의겸 · 김정호 · 김종민

김주영 · 김진표 · 김철민

김태년 · 김한정 · 김회재

남인순 · 노웅래 · 도종환

맹성규 • 문정복 • 문진석

민병덕 • 민형배 • 민홍철

박광온 • 박범계 • 박상혁

박성준 • 박영순 • 박완주

박용진 · 박재호 · 박 정

박주민 • 박찬대 • 백혜련 변재일 • 서동용 • 서삼석 서영교 · 서영석 · 설 훈 소병철 · 소병훈 · 송갑석 송기헌 · 송영길 · 송옥주 송재호 · 신동근 · 신영대 신정훈 • 신현영 • 안규백 안민석 · 안호영 · 양경숙 양기대 • 양이워영 • 어기구 오기형 · 오영환 · 오영훈 우상호 • 우원식 • 위성곤 유기홍・유동수・유정주 윤건영 · 윤관석 · 윤영덕 윤영찬 · 윤재갑 · 윤준병 윤호중 • 윤후덕 • 이개호 이광재 · 이동주 · 이병훈 이상민 · 이상헌 · 이성만 이소영・이수진・이수진(비) 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용우 이원욱 • 이원택 • 이인영 이장섭 • 이재정 • 이정문 이탄희 · 이학영 · 이해식 이형석 · 인재근 · 임오경 임종성 · 임호선 · 장경태 장철민 • 전용기 • 전재수 전해철 · 전혜숙 · 정성호 정일영 · 정청래 · 정춘숙

정태호·정필모·조승래 조오섭·조승천·조정식 주철현·진선미·진성준 천준호·최강욱·최기상 최인호·최종윤·최혜영 한병도·한정애·한준호 허 영·허종식·홍기원 홍성국·홍영표·홍익표 홍정민·황운하·황 희 의원(171인)

제안이유

개인의 생명·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 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 할 수 있음. 그러나,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.

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「형사소송법」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, 대한민국은 수사 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.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 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.

이에 현행 「검찰청법」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,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

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함(안 제4조제1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발의한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152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범죄수사, 공소"를 "공소"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수사는 제외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법령"을 "법률"로 한다.

1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

가.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

나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"검찰부이사관·정보통신부이사관·검찰수사서 기관·정보통신서기관"을 "검찰부이사관·정보통신부이사관·검찰서기 관·정보통신서기관"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검찰부이사관·검찰수사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·검찰사무관·수사사무관·마약수사사무관·전기사무관"을 "검찰부이사관·검찰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·검찰사무관·전기사무관"으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"검찰수사서기관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·검찰수사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·검찰사무관·수사사무관·마약수사사무관·전기사무관"을 "검찰서기관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·검찰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·검찰사무관·전기사무관"으로 한다.

제32조를 삭제한다.

제45조 중 "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관, 수사사무관, 마약수사사무관,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찰주사보, 마약수사주사보, 검찰서기, 마약 수사서기, 검찰서기보, 마약수사서기보"를 "검찰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 찰주사, 검찰주사보, 검찰서기, 검찰서기보"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"(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)"를 "(검찰서기관 등의 직무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찰주사보, 마약수사주사보"를 "검찰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찰주사, 검찰주사보"로, "마약수사서기"를 "검찰서기보"로 한다.

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1.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
- ③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보좌한다.

제47조를 삭제한다.

제48조제2항 중 "검찰수사서기관"을 "검찰서기관"으로 한다.

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검찰수사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찰수사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검찰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조(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은 검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4조(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범죄수사 사무(제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)는 경찰청이 승계한다.
- 제5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4조에 따라 승계되는 범죄수사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검찰청 또는 검사가 행한 처분, 그 밖의 행위와 검찰청 또는 검사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수사기관의 행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했 개 정 제4조(검사의 직무) ① 검사는 공 제4조(검사의 직무) ① -----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. 1. <u>범죄수사, 공소</u>의 제기 및 그 1. <u>공소</u>-----유지에 필요한 사항. 다만, 검 ----. 다만, 수 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| 사는 제외한다.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가. 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 <삭 제> 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 업범죄, 대형참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 죄 나.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| <삭 제> 다. 가목 • 나목의 범죄 및 사 <삭 제> 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는 범죄 <u><신</u>설> 1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가.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 한 범죄 나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

- 2. ~ 5. (생략)
- 6. 다른 <u>법령</u>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(생략)

제5조(검사의 직무관할)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 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직제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의 부,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,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, 부장은 검사로,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・정보통신부이사관・검찰수사서기관・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수 있다.
- ③ ④ (생 략)

제20조(직제) ① · ② (생 략)

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
<u>범죄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6법률
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검사의 직무관할)
<단서 삭제>
제16조(직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
검찰부
이사관·정보통신부이사관·검
찰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
<u>.</u>
·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직제) ①·② (현행과 같

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 을 두고, 사무국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・검찰 수사서기관・정보통신서기관・ 검찰사무관・수사사무관・마약 수사사무관・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(생략)

제26조(직제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, 사무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・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・검찰수사서기관・정보통신서기관・검찰사무관・수사사무관・마약수사사무관・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⑤ (생략)

제32조(검사의 직무대리) ① 검찰

	<u> </u>
	③
	검찰부이사관·검찰
	서기관·정보통신서기관·검찰
	사무관·전기사무관
	<u> </u>
	④ (현행과 같음)
제	26조(직제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	4
	검찰서기
	관으로,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・
	검찰서기관 · 정보통신서기관 ·
	검찰사무관·전기사무관
	⑤ (현행과 같음)
	<u><</u> 삭 제>

유)

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수 있다.

-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 관,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 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(검찰청 직원)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, 검찰부이사관, <u>검찰수 사서기관</u>, 검찰사무관, 수사사무관, 마약수사사무관, 검찰주사보,

제	45조(검찰청	정 직	원) -			
						검찰	서
	<u>기관,</u>	검찰	사무 -	관, 검	찰주	·사,	검
	<u>찰</u> 주시	}보,	검찰	서기,	, 검	찰서	기
	보						

마약수사주사보, 검찰서기, 마 약수사서기, 검찰서기보, 마약 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.

- 무) ① 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 무관,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찰주사보, 마약수사주사보,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ㅣ 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.
 - 1. 검사의 명<u>을 받은 수사에 관</u> 한 사무
 - 2. ~ 4. (생 략)
 - ② 검찰수사서기관, 수사사무관 |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 좌하며 「형사소송법」 제245 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 죄수사를 한다.
 - 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관, 수사사무관, 마약수사사무관,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찰 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.

제46조(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 제46조(검찰서기관 등의 직무) ① 검찰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찰 주사, 검찰주사보----------검찰서기보-----

- 1.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
- 2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③ 검찰서기, 마약수사서기, 검| ③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서기관, 검찰사무관, 검찰 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보좌한 다.

④ 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 <삭 제> 관,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 찰주사보, 마약수사주사보, 검 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 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 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 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.

제47조(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| <삭 제> 수행) ① 검찰주사. 마약수사주 사, 검찰주사보, 마약수사주사 보, 검찰서기, 마약수사서기, 검 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 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 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 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.

- 1. 검찰주사, 마약수사주사, 검 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9제 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 무
- 2. 검찰서기, 마약수사서기, 검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:

<u>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9제</u> <u>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</u> 무

-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 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.
- 1.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 찰관의 직무
- 2.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

 원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

 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

 의 직무
- 제48조(검찰총장 비서관) ① (생략)
 - ② 비서관은 <u>검찰수사서기관</u>이 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
- 제49조(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 원)①(생략)
 -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 ② --

제48	조(검	찰총장	ㅂ]	서관)	1	(현
행	과 길	(음)				
2		<u>검</u>	찰서	기관		
,						
제49	조(통	역공무	원	및	기술	공무
원) ①	(현행교	가 같	슬)		

을 받아 번역·통역 또는 기술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. <u>다만</u>, 전산사무관, 방송통신사무관, 전산주사, 방송통신주사, 전산 주사보, 방송통신주사보, 전산 <u>서기, 방송</u>통신서기, 전산서기 보,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 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 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전산사무관, 방송통신사무관, | <삭 제> 전산주사, 방송통신주사, 전산 주사보, 방송통신주사보: 「형 사소송법 : 제245조의9제2항 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
- 2. 전산서기, 방송통신서기, 전 산서기보, 방송통신서기보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9제 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 무

----.. <단서 삭제>

<삭 제>